소방관계법규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1] 총평

전체 난이도 : 중 수준 평균점수예상 : 70점~75점대

출제내역

소방기본법 : 5문항 소방시설공사업법 : 4문항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문항

위험물안전관리법: 5문항

소방관계법규 공채시험의 경우 4분법 균등하게 5문항씩 출제하는 경향 유지

난이도는 평균난이도로 중간, 기본수준으로 예상

-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업무의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인정 업무를 소 방시설업자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 ③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 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 한다.
 - ④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 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대한소방공제회에 위탁한다.

해설] ④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 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경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
 - ②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공사
 -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을 증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증축공사
 -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증축공사

해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5.1.6.,\ 2015.6.22.>$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 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 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 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 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 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 3.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 가. 수신반(受信盤)
 - 나. 소화펌프
 - 다. 동력(감시)제어반
- 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를 알려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③ 소방시설설계업의 설계사
 -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해설] 감리결과 통보 및 보고

- 1) 감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관계인, 도급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통보
- 2) 감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감리 결과보고서제출
- 4.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 ②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 ③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 하는 영업
 - ④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해설] 용어정의

-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 라. 방염처리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 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건축 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③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 ④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단독 주택 또 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해설]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의 범위(대통령령)

-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가.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 다. 정신의료기관: 300제곱미터
 -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이나 주차시설
 -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 동센터는 제외한다)
 -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 마.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소화기

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ㄷ. 가스자동소화장치

ㄹ. 단독경보형감지기

ㅁ. 가스누설경보기

① ¬, ≥

② ∟, □

③ ¬, ∟, ᡓ

④ ∟, ⊏, □

해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대상 : 단독주택 ,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 2) 설치 소방시설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3)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등에 관한 사항 : 시도의 조례
- 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상 소방 용품인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로 옳은 것은?
 - ① 10년 ② 15년 ③ 20년 ④ 25년

해설]내용연수 대상

1) 대상 :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2) 내용연수 : 10년

- 8.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③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④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해설] 소방시설의 내지설계기준 대상

내진설계 대상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 9.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7일전에 관계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소방특별조사는 원칙적으로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 ③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 ④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 ① 운동시설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
 - ② 관광 휴게시설 어린이회관
 - ③ 교육연구시설 자동차운전학원
 - ④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식물원
- 해설] ①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 : 문화 및 집회시설
 - ③ 자동차운전학원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④ 식물원 : 문화 및 집회시설
-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 ②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것
 - ③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 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
 - ④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

해설]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② 지정수량의 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④ 암반탱크저장소
- 해설] 예방규정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⑤ 암반탱크저장소
 - ⑥ 이송취급소
 -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 ①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② 마그네슘, 염소류
 - ③ 적린, 금속분
 - ④ 유황, 황산

해설]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할 위험물

- ① 알킬알루미늄
- (L) 알킬리튬
- ⓒ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 14.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지사
 - ② 수방청장
 - ③ 소방본부장
 - ④ 소방서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15. 다음은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수에 관한 규정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사업소에는 화학소방자동차 (①)대와 자체소방대원 (②)인을 두어야 한다.

7 0

- ① 2 10
- 2 2 15
- ③ 3 10
- ④ 3 15

해설]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의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1대 5인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10인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3CH 1591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4CH 20인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 16. 「소방기본법」상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 정할 수 있다.
 - ④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수 있다.

해설] 시·도지사는 다음의 지역 중 화재피해가 클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 로 지정할 수 있다.

- 17. 「소방기본법」상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사·의 결에 따라 정당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②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③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 ④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 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해설]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처분으로 인하 여 손실을 입은 자는

손실보상을 받을수 없다.

- 18. 「소방기본법」및 같은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 ②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③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④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해설] 소방지원활동

- 1)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2) 소방지원활동의 종류
 - 1. 산불에 대한 예방 진압 등 지원활동
 -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3. 집회 ·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 5. 삭제 <2015.7.24.>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활동
 - 1. 군・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19.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저수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10미터 이하일 것
 - ②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 ③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 ④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 수되는 구조일 것

해설] 저수조의 설치기준

-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
-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

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 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

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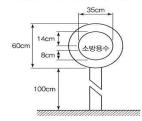
20.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문자	내측바탕	외측바탕
1	백색	적색	청색
2	적색	백색	청색
3	청색	백색	청색
4	백색	청색	적색

해설]

소방용수표지(제6조 제1항 관련)

- 1.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 가. 맨홀뚜껑은 지름 648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 나. 맨홀뚜껑에는 "소화전·주차금지" 또는 "저수조·주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 다.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 2.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ㆍ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과 같다.

- 1.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반사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위의 표지를 세우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규격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